

외국환거래 추가약정서(구 외환은행)[BoleroAdvise를 이용한 신용장통지 거래] 개정전후 대비표

현 행	개 정 (안)	비 고
<p align="center">외국환거래 추가약정서(구 외환은행) 【BoleroAdvise를 이용한 신용장통지 거래】</p> <p align="right">년 월 일</p> <p>주식회사 하나은행 앞</p> <p align="right">본인 (인)</p> <p align="right">주소</p> <p>본인(이하 “고객”이라 한다)은 이 약정서에서 달리 정하고 있지 않는 한 주식회사 하나은행(이하 “은행”이라 한다)과 BoleroAdvise시스템을 이용한 신용장통지 거래를 함에 있어 외국환거래약정서(구 외환은행)의 각 조항에 추가하여 다음 각 조항을 확약한다.</p> <p>정의 (기재생략) 제1조 ~ 제21조 (기재생략)</p>	<p align="center">외국환거래 추가약정서 【BoleroAdvise를 이용한 신용장통지 거래】</p> <p align="right">년 월 일</p> <p>주식회사 하나은행 앞</p> <p align="right">본인 (인)</p> <p align="right">주소</p> <p>본인(이하 “고객”이라 한다)은 이 약정서에서 달리 정하고 있지 않는 한 주식회사 하나은행(이하 “은행”이라 한다)과 BoleroAdvise시스템을 이용한 신용장통지 거래를 함에 있어 외국환거래약정서의 각 조항에 추가하여 다음 각 조항을 확약한다.</p> <p>정의 (현행과 동일) 제1조 ~ 제21조 (현행과 동일)</p>	<p>약정서 명칭변경 - ‘구 외환은행’ 삭제</p> <p>- 변경된 약정서명 반영</p>